재산관리 규정

제정 2021. 06. 09. 개정 2021. 12. 21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의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본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재산의 범위) 이 규정에서 "재산"이라 함은 본회의 부담이나 기증, 출자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부동산과 그 종물
 - 2. 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
 - 3. 임대권, 전화가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
 - 4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장 관 리

- 제4조(재산의 총괄) 본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는 사무국장(이하 "재산관리 관"이라 한다)이 이를 총괄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- 제5조(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)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, 관리자를 지정한다.

-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재산관리관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, 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하게(이하 "관리전환"이라 한다) 할 수 있다.
- **제6조(관리책임)** ①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,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 - ② 관리자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. (개정 2021, 12, 21.)
 - ③ 관리자는 소관재산을 본회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④ 관리자는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,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⑤ 재산의 안전관리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된다.
 - ⑥ 화재예방 등의 일반적 책임은 방화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. 다만, 관리업무와 관계없는 사유 또는 관리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타인의 고의·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⑦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화재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가 진다.
- 제7조(재해보고 등)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물건의 표시
 - 2. 원인
 - 3. 손해의 정도와 금액
 - 4.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
 - 5. 처리에 관한 의견

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,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장 취득 및 처분

- 제8조(등기수속 등)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의 관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등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회장에게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.
 - 1. 재산의 표시(등기일자, 등기번호 포함)
 - 2. 재산의 용도
 - 3. 재산의 취득 근거
 - 4.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
 - 5. 도시계획확인원
 - 6. 기타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신축등 보고) 재산을 신축, 증축, 개축, 이전, 철거, 이축 및 구조변경 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물건의 표시(등기일자, 등기번호 포함)
 - 2. 재산의 용도
 - 3.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
 - 4. 도시계획확인원
 - 5. 기타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장 매 각

제10조(매각조건) ① 재산은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
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
- 2.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
- 3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② 재산의 매각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